

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

제정 2019. 3. 26 조례 제2452호
일부개정 2020. 3. 31 조례 제2614호
일부개정 2020. 9. 29 조례 제2678호
일부개정 2021. 9. 28 조례 제2779호
일부개정 2023. 6. 21 조례 제2980호
일부개정 2024. 10. 1 조례 제3161호
일부개정 2025. 12. 19 조례 제3343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광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9. 29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5. 12. 19>

- “광명시 지역화폐”(이하 “지역화폐”라 한다)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인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(전자적·자기적 방법을 포함한다)하여 발행한 증표로서, 그 소지자가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제2호에 따른 가맹점으로부터 증표에 기재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.
- “가맹점”이란 제8조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점포를 말한다.
- “판매 대행점”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·충전·환전 등 발행·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.
- “운영 대행사”란 제19조에 따라 선정되어 전자적 형태의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

스템 관리 ·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 ·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·운영

제4조(지역화폐의 발행 등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12. 19>

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④ 지역화폐는 카드형으로 발행하며,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류형, 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. 지류형 권면금액은 1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 9. 29, 2025. 12. 19>

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25. 12. 19>

1. 지역화폐의 명칭
2. 지역화폐의 발행권자
3. 유효기간(카드형) 및 발행일(지류형)
4. 권면금액(지류형)

⑥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0. 9. 29, 개정 2025. 12. 19>

제4조의2(지역화폐의 운영자금 관리)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 · 판매 · 환전하기 위한 자금(이하 “지역화폐 운영자금”이라 한다)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,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1]

- 제5조(지역화폐 활성화 시책)** ① 시장은 지역 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,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,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, 전시회,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지역화폐 촉진 및 시민참여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, 배당금 포상금,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지역화폐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 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(추가충전금, 캐시백 등)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재난발생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9. 29, 2024. 10. 1>
- ⑤ 시장은 정책사업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, 공정무역, 로컬푸드 직매장 등 관련 사업장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0. 1>
- ⑥ 할인구매의 경우에 개인은 월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, 공공기관 및 가맹점 상인에게는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경우(명절·축제·지역경제 활성화 등)에는 구매한도를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. <단서신설 2020. 3. 31, 개정 2020. 9. 29, 2024. 10. 1>
- ⑦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, 홍보물품 제작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0. 1>

제6조(재정적 지원)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, 판매·환전 수수료,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) ①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 또는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

부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,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. <단서신설 2025. 12. 19>

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에 시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,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소지자가 지역화폐를 도난당하거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8조(가맹점의 등록) ①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<단서삭제 2021. 9. 28, 개정 2023. 6. 21, 2025. 12. 19>

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2.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

3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

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,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신설 2020. 9. 29>

③ 시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및 유통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9. 29>

④ 그 밖에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 9. 29>

제9조(가맹점의 준수사항)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5. 12. 19>

1.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

2.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

3.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

- 가.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
 - 나.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
- ②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 사용자가 권면금액(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12. 19>

제10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9. 29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
 2. 제8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 3.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 4.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 5.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,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9. 29>

제11조(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)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,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.

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25. 12. 19>

1.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2. 지역화폐가 위·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

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광명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
 2. 상인,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3.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 ·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 <신설 2024. 10. 1>

제1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해당 업무 실무자로 한다.

제1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
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(준용) 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, 위원의 해촉,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8조(운영세칙)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지역화폐의 유통

제19조(전자지역화폐 업무의 협약)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·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「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지역화폐 업무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12. 19>

② 운영 대행사에 대한 시장의 지휘·감독 등은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20. 9. 29>

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9. 29>

[제목개정 2025. 12. 19]

제20조(운영 대행사의 준수사항) ① 운영 대행사는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 · 분석 · 저장 등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운영 대행사는 지역화폐의 운영 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운영 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,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운영 대행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21조(운영 시스템의 보안) ① 운영 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

접근·변경·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운영 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·관리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22조(개인정보 보호) ① 운영 대행사는 운영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운영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5. 12. 19>

1.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
2.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
3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제23조(운영 대행사 해지 등)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협약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, 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0. 9. 29>

③ 운영 대행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 대행사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제24조(판매 대행점)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보관,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위해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지역화폐의 판매 대행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9. 29, 2025. 12. 19>

② 판매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9. 29>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9. 29>

④ 판매 대행점에 대한 시장의 지휘 · 감독 등은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신설 2025. 12. 19>

[제목개정 2020. 9. 29]

제25조(판매 대행점의 준수사항) ① 판매 대행점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판매 대행점은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9. 29, 2025. 12. 19>

제26조(지류형 지역화폐의 발행) 시장은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 · 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5. 12. 19]

제27조(지류형 지역화폐의 환전)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니면 지류형 지역화폐를 판매 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25. 12. 19]

제28조(폐기 등) ① 판매 대행점은 환전한 지류형 지역화폐를 지불 처리(지류형 지역화폐가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)하고 일자별, 권면가액별로 환전일로부터 5년 간 보관(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판매 대행점은 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판매 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.

③ 판매 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경과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매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폐기 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

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5. 12. 19]

제4장 보칙 <신설 2025. 12. 19>

제29조(수수료 등의 환수)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[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. 12. 19]

제3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. 12. 19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부칙 <2020. 3. 31 조례 제26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9. 29 조례 제2678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맹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등록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21. 9. 28 조례 제277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6. 21 조례 제298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10. 1 조례 제316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

부칙 <2025. 12. 19 조례 제334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